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202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redacted]시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10. 7. 접수 제24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제2 지방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 7. 24. 현재 합계 149,720,4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나. B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7. 10. 7.자로 1997. 10. 6.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7. 9. 29.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9. 30.까지 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999. 4. 24.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B이 계속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7. 9. 29.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B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B으로부터 220평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한꺼번에 받기로 B과 사이에 특약함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매매에 따른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발생할 매매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매매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라고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지체된 1999. 9. 30. 이후 언제든지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999. 9. 30.부터 진행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가 1999. 9.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7.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4호증의 기재와 B의 증언에 의하면, B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 경위를 시인하고 1999. 9. 30. 이후 수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서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현재로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B의 승인에 의하여 수차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별지 제1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시 C 전 380㎡

2. [redacted]시 D 답 1,513㎡

3. [redacted]시 E 전 694㎡.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4

별지 제2

지방세체납내역표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구)취득세(부동산)		1998.10.30	1998.12.31.	12,000,000	21,182,310
구)취득세(부동산)		1998.10.30.	1998.12.31.	12,000,000	21,239,390
구)취득세(부동산)		1998.10.30.	1998.12.31.	12,000,000	21,239,390
구)취득세(부동산)		1998.10.30.	1998.12.31.	12,000,000	21,239,390
구)취득세(부동산)		1996.07.19	1999.06.30.	514,920	851,960
구)취득세(부동산)		1999.07.19	1999.06.30.	514,920	851,960
주민세(종합소득)	2000귀속	2002.01.	2002.01.31.	716,730	1,268,560
재산세(토지)		2016.09.10	2016.09.30.	9,220	9,490
자동차세(자동차)		2001.12.10	2001.12.31.	181,720	190,790
자동차세(자동차)		2002.12.	2002.12.31.	168,740	177,170
자동차세(자동차)		2003.06.	2003.06.30.	168,740	177,170
자동차세(자동차)		2003.12.	2003.12.31.	155,760	163,540
자동차세(자동차)		2006.06.	2006.06.30.	129,800	133,680
사업소세(재산할)		1999.08.	1999.08.31.	1,965,300	3,478,360
사업소세(재산할)		2000.08.	2000.08.31.	1,513,060	3,478,360
합 계				54,038,910	95,681,520